북한산 위장반입 감시강화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항해일지 등 엄밀히 확인

관세청, 2월 1일부터

중국을 비롯해 제3국산 농림수산물의 북한산 위장 반입에 대한 통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2월1일부터 한약재 및 농림수산물등 북한산으로의 위장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와 항해일지 및 경유증명서를 엄밀히 확인, 심사하는등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및 검사증의 진위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뿐 아니라 북한에서 직접 반입하는 경우 선장이 확인한 항해일지를 정밀 심사키로 했다. 또 제3국 경유시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우리나라 까지의 선하증권 원본과 제3국의 세관등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행한 단순경유증명서 등을 확인키로 했다.

한편 통관관리강화 대상품목은 ▲참깨·녹두·팥·혼두·백출·복령·녹용등 관세상당치 부과품목과 한약재 및 기타 농림산물 ▲문어·복어·대합등 수산물 ▲당면·메주 등 조정관세 부과품목 ▲사향·웅담등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대상품목이다.

부실 영농법인 정리

농림부, 오늘 3월말까지

농림부는 오는 3월말까지 전국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조사를 벌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등 부실법인을 과감히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농림사업 중간평가에서 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한 이후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올해부터 정책자금 지원요건을 출자금 1억원 이상, 1~3년간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등으로 강화한데 이어 기존 법인체에 대해서도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 부실법인을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사업실적이 없거나 사실상 이름만 있는 부실법인은 정리하되 경영혁신을 통해 앞서가는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의 농기업경영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맥문동, 수확기로 일손절감 효과

맥문동을 다목적 뿌리 수확기로 수확하면 수확량 손실이 다소 있으나 소득면에서는 오히려 인력 수확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영남농업시험장은 맥문동에 대한 다목적 뿌리 수확기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뿌리 수확기를 이용할 경우 수확량의 4분의 1 가까운 분량이 손실을 입지만 노력절감으로 인건비 비중이 낮아져 순소득은 오히려 4% 가량 높아진다고 밝혔다.

영남농업시험장에 따르면 다목적 뿌리수확기의 10a당 수확시간과 비용은 다목적 뿌리 수확기가 50.4시간으로 21만2천원, 인력은 각각 2백52시간과 81만2천원으로 조사됐다.

전호·용도별 적정 재식거리 규명

경북 농진원

경북농촌진흥원에 따르면 10a(3백평)당 질소·인산·칼리 14-12kg과 퇴비 2t을 뿌리는 것을 기준으로 약재용 전호는 재식거리 60×30cm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진원이 약재용 전호를 60cm에 심는 거리를 10cm 간격으로 20×50cm까지 달리한 결과 30cm 간격일때 10a당 전호 생채의 무게가 2t으로 50cm의 1백18kg, 40cm의 1백64kg, 20cm의 2백23kg 보다 수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약재와 채소 겸용으로 전호를 이용할 때는 너비를 45cm로 하고 간격은 20cm로 하는 것이 가장 알맞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농진원의 조사에 따르면 20cm의 간격은 10a당 40cm로 할때 보다는 생채무게가 1백1kg, 30cm보다는 46kg, 10cm보다는 25kg 더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채소용으로만 전호를 활용할 경우는 너비 30cm로 간격은 20cm로 할때 10a당 생채무게 3백30kg으로 25cm의 2백12kg, 15cm의 3백24kg, 10cm의 3백1kg 보다 증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격품 약재 사용 의무화 보류 요청

한의협

한의사협회는 최근 약사법시행규칙개정령안 중 한의사를 규격품 사용 대상의무자로 지정한(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한의사를 의무사용자에서 삭제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한의협이 복지부에 올린 의견서에 따르면 한약재는 동일 명칭의 약재라도 약재의 생산지, 수령, 부위, 기미에 따라 약효가 달라 사용방법과 수치법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한의학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채 단순히 크기, 형태등에 기준한 규격품 약재는 한의사가 사용하기에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치료효율을 보장할 수 없어 한약재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견서는 또 지난해 7월1일부터 36종의 한약재 규격화제도가 시행된 후 36종 규격품 약재 대부분이 상품과 하품으로 혼합포장되어 품질저하를 가져왔고 한의사가 사용할 때 상품과 하품을 별도로 선별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면서 한의협의 한약재 규격화 안이 제출될 때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설

'원산지 표시 단속권'

원산지표시제는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 불법유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약판매업소(한약전문도매상, 한약방)의 원산지 표시 단속권을 두고 복지부와 국립 농산물검사소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약도매상등의 원산표시 단속에 대한 복지부의 일방적인 유권해석이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업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자(한약전문도매상·한약방·약국)가 취급 판매하는 한약재는 약사법상 '의약품'이므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하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복지부 유권해석의 배경은 한약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한 법적용의 중복(약사법·농산물 가공, 품질관리법)으로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인데 막말로 이중처벌이 단속강화효과로 이어져 한약재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가져온다면 더할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식품원료로 수입된 약재들이 시중에서 한약재로, 또는 국내산으로 둔갑 불법유통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속에서 원산지표시 단속을 더욱 강화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약사법 운운하며 그 대상이 아니니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더구나 의약품 판매업자(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한약업사)가 취급하는 한약재도 따지고 보면, 「의약품」이라고는 하나 양약과 달리 농민 직접 재배해 세척·건조·절단·포장등 단순가공만을 거친 「농산물」로 농산물수집상등에서 취급 판매하는 한약재와 형태와 효능상의 차이가 없는 동일품이다. 이처럼 같은 형태와 효능을 가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를 의약품과 농산물로 이원화시켜 관리하는 것 자체는 우선 그 구분이 애매할 뿐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약품이냐 농산물이냐를 구분짓기 전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 어떤것인지 원산지표시제 시행의 본래 취지를 먼저 꼼꼼이 따져 볼 일이다.

/지방단신/

「진안더덕」주산단지 조성

인삼의 고장인 전북 진안군이 더덕을 지역특산물로 지정, 전국적인 더덕주산단지로 적극 조성키로 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지역내 7백30농가가 인삼후작지등 1백79ha에서 7백20t의 더덕을 생산해 연간 57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진안더덕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사포닌을 다량 함유해 전국적인 성가를 얻고 있다.

풍기인삼 명성회복 나서

경북도는 인삼종합처리장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에 설치하는 등 풍기인삼의 명성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풍기인삼의 품질고급화를 통해 옛명성을 되찾고 주력수출농산물로 육성키 위해 21억원을 들여 풍기인삼 주산지인 오현리에 대지 1천여평, 건평 5백60평 규모로 1백20평의 저온저장고와 가공및 포장기계류 15종등을 갖춘 현대식 인삼종합처리장을 설치한다.

「춘설차」복합단지 조성

광주시는 무등산의 명품인 춘설차 생산을 크게 늘리기 위해 올부터 오는 2006년까지 10년간 대대적인 춘설차 복합단지 조성에 나섰다.

최근 시에 따르면 동구 운림동 무등산 자락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는 7ha 규모의 춘설차단지를 50ha까지 늘리고 50평 규모의 가공시설도 2백평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인사

▲전남 여천군 사무소장(공판장 겸직) 주성순(96년 12월 17일부) ▲전남 순천시 사무소장 홍재희(96년 12월 17일부) ▲경기도 하남시 공판장장 오공선(96년 12월 17일부) △경기도 시흥시 공판장장 길옥희(96년 12월 17일부)

내방

△정형모 부회장 △황인구 부회장 △김용한 이사 △장지홍 이사 △이인기 경기 포천군 사무소장 △이계순 경기 일산시 공판장장 △우대기 강원 태백시 공판장장 △신상섭 충북 단양군 공판장장 △이용우 대전광역시 공판장장 △김인태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소장 △최상환 경북 경주시 사무소장